

영주시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안

의 안 번 호	260
------------	-----

제출년월일 : 2006. 4.

제 출 자 : 영 주 시 장

1. 제안 이유

-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해당학교에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식습관 개선을 도모하고, 우수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조절에 기여하고
- 학교급식을 통하여 모든 학생들이 균형 잡힌 식사를 함으로써 우리의 전통 음식문화를 계승하고 우수 농수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에 대한 올바른 이해 등을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정의(제2조)

- 우수농수축산물 :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
- 식품비 : 학교급식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가공·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우수 농수축산물을 구입 및 우수 농축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 구입비
- 식재료 :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

○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제3조)

-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 시장은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음

○ 지원대상(제4조)

영주시 관내에 소재하여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교육기관(초·중·고등학교)으로 함.

○ 우수 농수축산물 사용(제5조)

시장과 경상북도영주교육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지원신청(제6조)

학교급식 식품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신청서를 영주교육청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

○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설치(제7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대상의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10인 이내의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회를 설치하여야 함.

○ 학교급식 등의 의무(제8조)

급식학교의 장은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하고 매년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하여 교육청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지도·감독(제9조)

- 시장은 필요시 지원대상의 학교에 급식 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함.
- 시장과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함.
- 지원대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지원금을 우수 농수축산물을 구입에 사용하지 않는 등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에 대해서도 이

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함.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자료

-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도자치행정과-6343(2004.8.11.)】
- 관련법령 발췌 1부.

영주시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급식으로 「학교급식법」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우수 농·수·축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3. "식품비"라 함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가공·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우수 농·축산물 구입 및 우수 농·축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구입비를 말한다.
4.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제3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영주시 관내에 소재하며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교육기관으로 한다.

제5조(우수 농·수·축산물 사용) 시장과 경상북도영주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 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에게 학교급식 식품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경상북도영주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의 장은 직접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우수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계획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이를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시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식품비 지원대상의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시장이 임명 및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1. 부시장 및 관련 과장 각 1인
2. 영주시교육청 관련 과장
3. 영주시의회 의원 1인
4. 학부모 단체에서 추천한 자 1인
5. 교원 단체에서 추천한 자 1인

6. 영양사 단체에서 추천한 자 1인
7. 농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1인
8. 올바른 학교급식을 위한 영주시 운동본부에서 추천한 자 1인
9.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8조(급식학교 등의 의무) ①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급식학교의 장은 식품비 사용내역을 교육장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의 장은 직접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①시장은 필요시 지원대상의 학교에 급식 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시장과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지원금을 우수 농·수·축산물 구입에 사용하지 않는 등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에 대해서도 이를 회수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대한 경북 함께 뛰는 300만"



경상북도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필요한 참고자료 통보

- 국무조정실 식품안전기획단-167(2004.7.27)호 및 행정자치부 분권지원과-1849(2004.8.5)호와 관련입니다.
- 국무조정실에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학교급식식품비지원과 관련한 표준조례안과 재의요구증인 조례와 대법원제소증인 조례에 대한 처리지침을 통보하오니 시군에서 조례 제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지사

수신자 각시군

★지방행정주사보 오상철 지방행정사무관 하동관 자치행정과장 전결 08/11
윤경용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6343 (2004.08.11.) 접수 총무과-5945 (2004.08.16.)
우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5-3 / <http://www.gb.go.kr>
전화 (053)950-2137 /전송 (053)950-3794 / osc723@gb.go.kr / 공개

〈별첨〉

시군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급식으로 학교급식법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우수 농수·축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3. “식품비”라 함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가공·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우수 농·축산물을 구입 및 우수 농·축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구입비를 말한다.
4.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제3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시·군·구에 소재하며,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교육기관으로 한다.

제5조 (우수 농·수·축산물 사용) ① 시장·군수·구청장과 시·군·구교육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 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

칙으로 정한다.

제6조 (지원신청)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학교급식 식품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군·구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우수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시 소요되는 충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계획
 6. 기타 필요한 사항
- ② 시·군·구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식품비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규모와 내역, 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1. 시·군·구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및 관련 실국장
 2. 시·군·구 교육청 관련국장
 3. 시·군·구 의회의원
 4. 학부모 단체
 5. 교원 단체
 6. 영양사 단체
 7. 농민단체
 8. 시민단체
 9.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③ 위원장은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위원회에 서 호선한다.
- 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급식학교 등의 의무) ① 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우수 농·수·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급식학교의 장은 식품비 사용내역을 시·군·구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지도·감독)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된 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군·구교육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식품비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식품비를 회수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령

□ 학교급식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6.12.30>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 안에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당해 학교 또는 인접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과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공동급식시설을 설치하여 관할구역의 각급학교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위탁급식"이라 함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교의 장으로부터 학교급식을 위탁받아 운영하거나, 조리·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3. "학교급식공급업자"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급식에 관한 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를 말한다.

□ 학교급식법 제4조

제4조 (학교급식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01.1.29>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2. 초·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3. 초·중등교육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4.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전문개정 1999.8.31]

□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 제5항

제7조 (급식경비부담) ⑤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3.12.30>

시군별 학교급식조례 제정 추진상황

2006. 3. 31 현재

시군명	제정 및 전달 일자	발표자	담당 부서	제작 및 배포처
도	·조례공포(04.4.1)	의원	자치 행정과 교육지원담당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 축산물
포항시	·조례안 의회 유보(04.12.14)	주민	자치 행정과 자치행정담당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 축산물
경주시	·조례공포(05.10.26)	주민	자치 행정과 주민자치담당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는 농축수산물
김천시	·조례공포(05.08.11)	시장	총무과 시정담당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 축산물
안동시	·조례공포(04.05.27) ·시행규칙(05.07.29)	주민	총무과 교육지원담당	안전하고 신선하며,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
구미시	·조례공포(06.01.13)	주민	총무과 지도교육담당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 수산물
영주시	·임법예고 만료 (2006.03.27)	시장	총무과 교류협력담당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 수산물
영천시	·조례공포(05.08.10)	주민	총무과 자치발전담당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우리농산물 사용시 WTO의 협용 범위 내에서 예산지원)
상주시	·조례공포(04.12.16)	주민	총무과 자치행정담당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우리농산물 사용시 WTO의 협용 범위 내에서 예산지원)
문경시	·조례공포(05.12.13)	의원	총무과 자치지원담당	
경산시	·조례공포(06.01.09)	시장	기획감사담당관 교육지원담당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 수산물
군위군	·조례안 준비 중		총무과 주민자치담당	
의성군	·조례안 준비 중	군수	총무과 행정담당	
청송군	·조례안 준비 중	주민	총무과 행정담당	청송에서 생산 되는 농수축산물
영양군	·조례공포(04.08.13) ·시행규칙(05.04.01)	군수	총무과 자치행정담당	안전하고 신선하며,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
영덕군	·조례안 준비 중	군수	기획감사실 기획 담당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 축산물

제 1 차		제 2 차		제 3 차	
청도군	조례안 준비 중	군수	총 무 과 행정담당		
고령군	·조례공포(04.12.21) ·시행규칙(05.03.15)	군수	총 무 과 교육지원담당	국내산 우수 농축산물 조약 및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 제2조 목표 조항 있음	
성주군	·조례공포(05.06.01)	군수	자 치 혁 신 과 시책개발교육담당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	
칠곡군	·조례공포(04.12.31)	군수	총 무 과 주민자치담당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우리농산물사용시WTO의허용 범위 내에서 예산지원)	
예천군	·조례공포(05.11.21)	군수	총 무 과 행정담당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우리농산물사용시WTO의허용 범위 내에서 예산지원)	
봉화군	·조례공포(05.05.26)	주민	총 무 과 행정담당	안전하고 친환경 농수축산물	
울진군	·조례공포(04.11.5) ·시행규칙(05.3.18)	군수	친환경농정과 농 산 담 당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우리농산물사용시WTO의허용 범위 내에서 예산지원)	
울릉군	·조례안 준비 중		총 무 과 행정담당		